

1997. 7.

제 정 및 개 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결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7. 7. 11	'97. 7. 14	'97. 7. 22	'97. 7. 22	보건사업과 과장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 조례안	"	"	"	"	"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 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 례증개정조례안	"	"	"	"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임기 4년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보건소장
- 기능 : 시장의 자문기관
- 회의 : -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나.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 되어 조례의 적용 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및제4조" 를 "지역보건법 제7조및제10조"로
- 제3조 중 "제6조" 를 "제9조"로

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적용 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제1조)
-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관련사항인 제8조를 삭제

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일부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조례와 지적도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장복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장복리 362-1에서 362-6으로
- 대사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사문리 320에서 321-10으로

- 동학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문학리 196-1에서 196-5로
- 개천안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손동리 654-11에서 654-12로

3. 전문위원 겸임보고 요지

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 7.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등이 참여하는 충주시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 보건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 보건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1995. 1. 14 조례제정 (제103호)시 일부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조례와 지적 도상의 지번이 상이하게 지정되었고 따라서 이를 바로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질 의)

- 타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 이유는?

▣ 답변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사업계획서를 4년마다 작성토록 되어있어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였음.

(질 의)

-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제명을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답변

- 검토 하겠음.

(질 의)

- 제10조(수당등)에 있어 위원회 출석 공무원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 답변

-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시 소속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 의)

- 제6조(위원의 해촉) 제1호에 타, 시·도 관내로 이주 한때의 위원 해촉 규정을 타, 시·군·구로 해야 적합할 것 같은데?

■ 답변

- 검토 하겠음.

나.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5. 수정안요지

○별표 1

6. 심사결과

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수정의결

나.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7. 불임

- 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나.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별 표 1】

■ 조례명 :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안 제1조중 "조직 및 운영에"를 "설치 및 조직운영에"로 한다.

안 제6조제1호중 "타 시·도"를 "타 시·군·구"로 한다.

안 제10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정안	수정안
제명 : <u>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u>	제명 : <u>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u>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u>조직 및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설치 및 조직운영에</u> - - - - - - - - - -
제6조 (위원회 해촉) (생략)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u>타 시·도</u> 관내로 이전한때 2 - 3 (생략)	제6조 (위원회 해촉) (원안과 같음) 1. - - - - - <u>타 시·군·구</u> - - - - - 2 - 3 (원안과 같음)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 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당등) - - - - - - - - - - - - - - - .(삭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련기관 ·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
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3조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장록지구보건진료소 소재지란중 “362-1”을 “362-6”으로,
대사지구보건진료소 소재지란중 “320”을 “321-10”으로,
동락지구보건진료소 소재지란중 “196-1”을 “196-5”으로,
개천안지구보건진료소 소재지란중 “654-11”을 “654-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